

**제50조(과정이수학점 중 전공학점 취득기준)**

①학칙 제27조의 과정이수학점(수료학점)의 1/2에 해당하는 학점을 소속 학과에서 취득해야 한다. 다만, 학과내의 세부전공별 이수학점에 대한 기준은 학과내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허가 하에 교내외 타 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는 해당 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대학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해당 과목은 소속 학과와 유사한 전공과목이거나 졸업논문 주제와 연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4.30, 2016.11.4>